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1979.09.01.>, <30차 개정 2021.06.0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7조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06.04., 2021.02.04>

제 2 조 (적용범위) ①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기관(개인 포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06.04., 2021.02.04>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6.04.>

제 3 조 (사무관장)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학생경력개발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9.09.01, 2010.06.04., 2018.10.28>

제 4 조 (심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0.06.04.>

제 2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제 5 조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하며, 종류에 따라서는 지도교수 또는 관장 부서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6.04.>

1. 상명장학금 :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05.15., 2021.06.09>

2. 성적우수장학금 : 학년별 학과(전공)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2013.05.15>

3. 면학장학금 : 학업성적이 양호(면학A)하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한(면학B)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02.04.>

4. 디딤돌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2.02.04.>

5. 근로장학금 : 교내 기관 및 각 부서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6. 리더십장학금 :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생자치활동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

4-2-5 장학금 지급 규정

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02.04, 2013.05.15., 2021.02.04>

7. 체육특기장학금 : 체육특기자로 특별전형되어 입학한 자 중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8. 국가보훈장학금 : 국가보훈장학금 지급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9. 형제·자매장학금 : 우리 대학교에 재적 중인 형제·자매학생의 경우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하며, 형제·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동시 재학 중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2021.06.09>

10. 복지장학금 :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우리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 학교 포함)의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명예)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 중인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의 조건 외에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3.12.27, 2015.03.01., 2021.06.09>

11. 삭제 <2017.11.07.>

12. 공로장학금 : 국가·사회 및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13. 특별장학금 :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추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14. 외국인장학금 : 우리 대학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2021.06.09>

15. 나눔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가족에게 지급한다.

16. 사회봉사장학금 :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17. 향상장학금 :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 향상된 자에게 지급한다.

18. 동문장학금 :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편입학한 동문 또는 동문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06.09.>

19. 해외봉사장학금 : 교내·외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05.15, 개정 2016.03.01.>

20. 글로벌장학금 : 대학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 등)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03.01.>

21.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0.06.04.>

제 6 조 (교외장학금) ① 외부 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나 장학금 지급 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12.02.04>

②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해당 대학, 학과(전공)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때는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05.15.>

③ 해당 대학 및 학과(전공)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학 및 학과(전공)별 선발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개정 2012.02.04., 2013.05.15>

④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⑤ 교외장학금 지급기관에서 등록금 초과수혜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02.04, 개정 2013.05.15>

[제목개정 2010.06.04.][제목개정 2012.02.04]

제 7 조 (우선순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06.04.>

1. 총점이 높은 자
2.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3.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개정 2010.06.04.>
5.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6.04., 2012.02.04>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학생간부)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신설 2010.06.04, 개정 2012.02.04, 2013.05.15., 2016.03.01>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0.06.04, 개정 2012.02.04.>

② 성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의 중복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2013.05.15>

[제목개정 2010.06.04][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A장학금 <개정 2010.06.04., 2021.02.04>
2. 삭제 <2021.02.04.>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개정 2010.06.04., 2012.02.04>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17.11.07.>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10.06.04.]

4-2-5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0 조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취소)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해당자 중 등록을 필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6.04.>

1. 휴학자 <개정 2010.06.04.>
2. 제적 또는 자퇴자 <개정 2010.06.04.>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개정 2010.06.04, 2012.02.04>
[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11 조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12 조 (성적기준) ① 장학생 선발에 따르는 성적의 기준은 직전 학기의 것에 의한다.

②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1>

③ 제2항 이외의 장학금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학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최소 신청학점 이상 취득자(평점평균 2.0 미만 제외)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복지장학금, 공로장학금, 특별장학금, 나눔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하(학사경고자 제외)인 경우 예외로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2012.02.04, 2013.05.15, 2017.11.07, 2021.02.04>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13 조 (지급방법) ① 학생경력개발처는 확정된 장학생의 장학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처리하거나 계좌입금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09.01, 2010.06.04., 2018.10.28>

②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0.06.04>

[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14 조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정해진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미등록 군휴학자는 그 자격을 유지하되 장학생 선정 당시의 장학금 지급액과 동일 금액을 복학 시 지급한다. <개정 2010.06.04, 2021.02.04>

[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10.06.04.]

제 15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중전 제16조에서 이동 2010.06.04.]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04.]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04.]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2.02.04.]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원자녀장학금은 1992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2.02.04.]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0조 제2항은 1995학년도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 제7항 및 제12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04.]

부 칙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9.09.01.]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0.06.04.]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2.02.04.]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3.05.15.]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3.12.27.]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5.03.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적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16.03.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국가고시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

[본부칙신설 2017.11.07.]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10.28.]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02.04.]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06.09]